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

1976. 4. 19. 제정 1978. 8. 25. 개정

- 제 1 조 (목적) 이 세칙은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국내의 대학원 박사학 위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학 허용 기준과 진학기간중의 처우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적용대상) 이 세칙은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게 적용한다.
- 제 3 조 (본교 대학원 진학) ①본교 교원은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할 수 없다. 다만, 여자교원으로 전공학문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. (개정 1978.8.25)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진학승인신청서(서식 제1호)를 입학예정학기 개시일 3주일 전까지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1978.8.25)
 - ③(삭제 1978.8.25)
 - ④(삭제 1978.8.25)
- 제 4 조 (국내 타교 대학원 진학) 본교 교원으로 국내의 타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진학승인신청서를 입학예정학기 개시일 3주일 전까지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(전문개정 1978.8.25)

- 제 5 조 (대학원 진학승인조건) 총장이 제3조 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승인한다.
 - 1. 승인신청교원의 전공분야의 성격
 - 2. 승인신청교원 소속 학과 또는 전공의 전임교원수의 사정
 - 3. 학교의 재정사정
- 제 6 조 (삭제 1978.8.25)
- 제 7 조 (삭제 1978.8.25)
- 제 8 조 (삭제 1978.8.25)
- 제 9 조 (진학기간중의 처우)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소요학점을 취득하는 기간중인 교원의 교수책임시간 수는 주당 9시간 내외로한다. (전문개정 1978.8.25)
- 제 10 조 (과정 이수상황 보고) 이 세칙에 의하여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하는 본교 교원은 매 학기 말일까지 당해 학기간의 박사학위과정 이수상황보고서(서식 제2호)를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전임교원의 대학원박사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

제 11 조 (삭제 1978.8.25)

제 12 조 (삭제 1978.8.25)

제 13 조 (시행요령)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이 세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1976학년도 제2학기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교원은 1976년 6월 30일까지 제3조 제2항 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(1978.8.25 개정)

- ①이 세칙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진학을 이유로 구 규정에 의하여 반전임 조건이었던 교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근속년수에 통산하고,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2년 까지를 근속년수에 통산한다.

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 생략